

2020년도 제13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

I. 회의 개요

- 일 자 : 2020. 7. 7.(화요일)
- 방 법 : 온라인심의
- 참 석 자 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
 - 심의위원 : 신창환 위원(분과위원장), 김연희 위원, 심장섭 위원, 최현용 위원
-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

〈의결안건〉 ※ 안건 검토 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

-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
II. 회의내용 및 결과

-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 - 주요내용: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15건(안건번호 제2020-64309호~64408호)
 - 회의결과: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·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고,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

Ⅲ. 주요내용

- A 위원 : 상기 안전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하므로 가결함
다만 이미 삭제되었거나 전송이 중지된 경우에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해야 할 것임
- B 위원 : '언더워터' 등 영화와 '모여라 삼시 세끼' 등 방송물을 인터넷에 불법으로 복제 전송하는 행위는 해당 저작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를 시정 권고토록 조치하는 것에 동의함.
- C 위원 : 제2020-64309호~제2020-64408호는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,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
- D 위원 : 대상 안전은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(영화, 방송)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. 다만,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.

2020년 제130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
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20. 7. 20.

분과위원장 신창환

위원 김연희

위원 심장섭

위원 최현용